

## 다. 제출서류

### 1) 필수서류

- ① 지급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(별지 1호),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(별지 제1-1호)
- ② 수산업·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(별지 2호 또는 3호)

-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일치 : 어촌(업)계 또는 마을 단위 환경실천 협약서  
(별지 2호) (협약인원은 어업활동사실확인심사표 인원으로 같음)
-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불일치 : 개인단위 환경실천 협약서  
(별지 3호) (어가와 어업활동지역 기준 읍·면·동장과 협약)

- ③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(별지 4호, 4-1호, 5호)

-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일치 : 어업활동사실확인심사표(어업활동사실확인위원회 작성)
-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불일치하거나, 개별 접수\* 시 : 관내(외) 어업활동사실확인서 첨부
- \* 어촌(업)계, 마을 이(통)장 등을 거치지 않고 어업인이 직접 읍·면·동 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을 말함

- ④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참고 6)

### 2) 추가서류

- ① 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(별지 6호) -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

<복지급여 수급자 (㉠~㉨\* 외 기타)>

- \* 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㉠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㉢ 장애수당 ㉣ 한 부모 ㉤ 차상위(자활, 계층확인, 자산형성) ㉥ 장애아동 수당 ㉦ 희귀 난치성 질환 ㉧ 국가유공자 급여 ㉨ 기타 수급에 관한 사항

-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,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

**<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 증빙서류>**

▶ 신청인 본인이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: '가' 또는 '나'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
**가. 어업인 확인서 「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**(해양수산부고시 제2020-138호, '20.9.2.)  
- 신청서 제출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(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)

**나. 다음 '(1)' 또는 '(2)'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**

(1)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

\*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

- ①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(금액)
  - ② 거래명세표(서) :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, 사업장 주소, 연락처, 거래금액, 품목, 거래일자,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
  - ③ 세금계산서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
- \* ②, ③의 경우, 전자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간이 영수증 등은 불가하며 구매 확인서(별지 15호)로 제출 가능
- ④ 어촌계 사매매 장부 : 개인별 작업일자별 수산물 채취의 품목,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(서명)한 서류
  - ⑤ 구매 확인서(별지 15호) :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 사실 확인서 등 판매 사실의 증빙이 가능한 서식 인정 가능

(2)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\* 아래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

- ① 어촌계 조업일지(별지 16호) ② 입·출항 신고서(선박출입항신고소 발행)
- ③ 어장관리실태조사서(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별지 39호 서식) 등

※ 상기 '나'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**신청연도 직전년도 1년간 실적('24.1.1.~'24.12.31.)**을 기준으로 하며, 구비하려는 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읍·면·동장이 확인